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이산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 하던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을 “4명(6급 3명, 7급 1명)”
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887”을 “4,975”로 하고, 일반직 계 “4,887”을 “4,9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05”를 “4,573”으로, 전문경력관 “376”을 “396”
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6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1. ~ 11의2. (생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11의3.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12. ~ 16. (생략)	12. ~ 16. (현행과 같음)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① (생략)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3. 삭제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u>11.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삭제></u>
12. ~ 20. (생략)	12. ~ 20.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3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u>3명(6급 2명, 7급 1명)</u> 은 식품의	③ ----- ----- <u>4명(6급 3명, 7급 1명)</u> -----

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 -----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87</u>	<u>4,975</u>	+88
일반직 계	<u>4,887</u>	<u>4,975</u>	+88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05</u>	<u>4,573</u>	+68
전문경력관	<u>376</u>	<u>396</u>	+2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